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4호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다. 정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라. 거주군인 및 군인 가족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마. 협의회 구성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4.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임실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소자본 창업지원
3.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4. 그 밖에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의 임실군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군수는 관·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

관련법령

□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